

# 대장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9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6년 10월 11일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청소과장 도 욱)

### □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(2006.10.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성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	비고 (임기)
계	6명				
위원 (주민)	박수재	여	58.12.0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~2008.10.23
위원 (주민)	한정순	여	53.03.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~2008.10.23
위원 (시의원)	신석철	남	60.12.10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4-14	~2008.10.23
위원 (시의원)	박동학	남	57.09.08	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69 102-4817	~2008.10.23
위원 (전문가)	여운호	남	55.08.01	서울 양천 신정1동 목동A 1026-1404	~2008.10.23
위원 (전문가)	김미경	여	62.07.30	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948	~2008.10.23

□ 참고사항(관계법규)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 해당없음		○ 해당없음	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#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8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9. 29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(2006.10.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주민지원 협의체의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□ 동의 요구내용

-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성 명	성별	생년월일	주 소	비 고 (임기)
계	6명				
위원 (주민)	박수재	여	58.12.0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~2008.10. 23
위원 (주민)	한정순	여	53.03.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~2008.10. 23
위원 (시의원)	신석철	남	60.12.10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4-14	~2008.10. 23
위원 (시의원)	박동학	남	57.09.08	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69 102-4817	~2008.10. 23
위원 (전문가)	여운호	남	55.08.01	서울 양천 신정1동 목동A 1026-1404	~2008.10. 23
위원 (전문가)	김미경	여	62.07.30	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948	~2008.10. 23

### □ 관계법규 참고사항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

法	施 行 令																
<p>第17條의2 (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절차사유) 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의회의원,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</li> <li>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</li> </ol> <p>②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 【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】</p> <p>①<b>법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주민지원협의체”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/b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<b>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b>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③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④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그 밖의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,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<p>[별표 2]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(제18조제1항관련)</p> <p>1. 지원협의체의 정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매 립 시 설</th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소 각 시 설</th> </tr> <tr> <th>조성면적</th> <th>정원</th> <th>처리규모</th> <th>정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만제곱미터이상</td> <td>21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이상</td> <td>15인 이내</td> </tr> <tr> <td>100만제곱미터미만</td> <td>15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미만</td> <td>11인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 지원협의체의 위원</p> <p>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, 환경상 영향의 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의회의원</li> <li>나. 주변영향지역 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서 선정한 읍·면·동 주민대표</li> <li>다.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</li> </ol> <p>비 고 : 1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. 2.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 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·군·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. 3.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, 국·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한다.</p>	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조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
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													
조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														